FTA TRADE REPORT

# 02

## FTA EXPERTS

① USMCA와 한국의 양자 FTA : 농식품 원산지 규정 비교 연구
② EU의 CBAM이후 전개과정과 한국무역과의 연계성 연구

# USMCA와 한국의 양자 FTA : 농식품 원산지 규정 비교 연구

**이상현** 부교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 1. 서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원산지 규정은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협정별, 국가별, 품목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률적인 평가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원산지 규정에 관한 국내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기업들은 여러 국가와의 FTA로 인해 제각각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을 따라야 하므로 큰 혼란과 부담을 겪게 된다. 이는 'FTA 스파게티볼 현상'으로 불리는데, FTA 활용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FTA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자간 및 양자 간 FTA의 원산지 규정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이하 NAFTA)에서 USMCA (th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Canada)로 전환되면서 원산지 규정이 강화된 것을 계기로,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인 자동차 분야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한편 2015년부터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서, 우리 농업은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정부는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분야 국제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변화가 한국 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세계 3대 무역협정인 USMCA의 농식품 원산지 규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농식품 수출 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USMCA 배경

1994년 체결된 NAFTA는 당시 가장 포괄적인 FTA로 평가받았다. NAFTA는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공정 무역,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 비용과 환경 규제 수준이 낮은 멕시코로 미국 기업들의 생산 시설이 이전되면서,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무역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NAFTA 재협상을 추진하여 2020년 7월 USMCA를 발효시켰다. USMCA는 NAFTA의 현대화, 노동 및 환경 분야 집행 강화,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USMCA는 원산지 규정을 수정하여 역내 공급망과 생산구조의 재편을 도모하였다.

한편, USMCA는 디지털 무역, 환경, 반부패, 경쟁정책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아우르고 있어 21세기형 FTA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Schott, 2021). 또

한 자동차 부문의 역내 부품 사용 비율 상향 조정, 노동자 임금 규정 도입 등 원산지 규정 강화를 통해 역외국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특징도 보인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USMCA가 농업 보조금 투명성 제고, 농업 바이오기술 제품 무역 촉진, 식품 안전 및 동식물 위생 (SPS) 조치 조화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USDA, 2020). 아울러 낙농품, 설탕 등 민감 품목의 관세율 할당 (TRQ)을 유지 또는 확대하여 자국 농업 보호도 강화하였다.

NAFTA는 한-칠레 FTA 등 후속 FTA의 주요 참고 대상이 되었고, USMCA 역시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와 개별국과의 양자 FTA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USMCA의 주요 내용과 특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향후 한국의 통상정책 수립과 FTA 협상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USMCA 농식품 분야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마련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 3. USMCA 및 한국과 USMCA 회원국간 양자 FTA의 농식품 분야 원산지 규정 비교

USMCA, 한-미 FTA, 한-캐 FTA의 농식품 분야 원산지 규정을 비교한 결과, 이들 협정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모든 협정은 협정 당사국 간의 누적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제품에 대한 미소기준을 1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협정 당사국 간 무역 촉진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농수산품의 원산지 규정은 세 협정 모두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6단위 세번변경 후 10%의 미소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통점은 협정 간 무역 규범의 조화를 추구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중간재의 원산지 규정에서는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USMCA와 한-캐 FTA는 원산지 규정에 중간재 흡수원칙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한-미 FTA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미 FTA가 중간재 사용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간재 흡수원칙의 유무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USMCA는 불인정 공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 FTA와 한-캐 FTA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불인정 공정 규정의 존재 여부는 특정 공정을 거친 제품의 원산지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를 고려하여 생산 공정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기준 및 산정 방법에 있어서도 세 협정은 상이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모든 협정은 유사한 기준가격을 사용하여 역내 부가가치 비율(RVC)을 산정하지만, 계산 방법과 일반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다. USMCA는 공제법을 사용하며 RVC가 60% 이상일 경우 원산지산으로 인정하는 반면, 한-미 FTA는 공제법과 집적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한-캐 FTA는 공제법만을 사용한다. 이러한 차이는 각 협정의 특성과 협상 당사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가가치 산정 방식의 차이는 기업들의 원산지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산정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완전생산 정의에 있어서도 세부적인 차이가 관찰되었다. 산 동물과 육류의 경우, 세 협정 모두 유사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나, 과채류의 경우 USMCA는 "grown, cultivated, harvested, picked, or gathered"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한-미 FTA와 한-캐 FTA는 "grown and harvested"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USMCA가 과채류의 완전생산 인정 범위를 더 넓게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농산물 교역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으며, 각 협정의 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과채류를 생산, 수확, 가공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소매용 포장재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USMCA와 한-미 FTA는 세번변경 요건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RVC 산정 시에는 포함하는 반면, 한-캐 FTA는 소매용 포장재를 완전히 불포함하고 있다. 이는 포장재의 원산지가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이 협정마다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들은 각 협정의 규정에 맞추어 포장재 사용을 최적화함으로써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고, 특혜 관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간접재료 및 역외가공에 대한 규정 역시 협정 간 차이를 보인다. USMCA는 간접재료를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지만, 한-미 FTA와 한-캐 FTA는 이를 불포함하고 있다. 또한, 역외가공에 대해서는 한-미 FTA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으며, 각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간접재료를 사용하고 역외가공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USMCA, 한-미 FTA, 한-캐 FTA의 농식품 분야 원산지 규정은 기본적인 원칙에서는 유사성을 보이지만, 세부 규정과 적용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각 협정의 고유한 특성과 협상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USMCA 회원국 간의 무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차

이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협정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특성과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고려하여, 각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최적화된 생산 및 무역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는 협정 간 원산지 규정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의 원활한 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Table 1** Comparisons on General Rules of Origins – USMCA

| 구분 | USMCA | 한·미 FTA | 한·캐 FTA |
|---|---|---|---|
| • 누적 | | | |
| – 양자누적 | 인정 | 인정 | 인정 |
| – 완전누적 | 인정 | 불인정 | 불인정 |
| – 유사누적 | 불인정 | 불인정 | 불인정 |
| • 미소기준 (% 이하) | | | |
| – 일반제품 | 10% | 10% | 10% |
| – 섬유제품(중량) | 10% | 7% | 10% |
| – 농수산물 | 10%+CTSH[1] (제1~27류) | 10%+CTSH (제1~24류) | 10%+CTSH (제1~21류) |
| • 중간재 흡수원칙 | 규정 | 미규정 | 규정 |
| • 불인정 공정 | 규정[2] | 미규정 | 미규정 |
| • 포장재 | | | |
| – 소매용 | 세번변경요건: 불포함<br>RVC 산정: 포함 | 세번변경요건: 불포함<br>RVC 산정: 포함 | 불포함 |
| – 수송용 | 불포함 | 불포함 | 불포함 |
| • 간접재료 | 원산지로 인정 | 불포함 | 불포함 |
| • 역외가공 | 미규정 | 규정 | 불인정 |
| • 개성공단 특례 | 미규정 | 규정 | 미규정 |
| • 완전생산 정의 | | | |
| – 산 동물 | "born and raised" | "born and raised" | "born and raised" |
| – 육류 | "obtained from a live animal" | "obtained from a live animal" | "obtained from a live animal" |
| – 과채류 | "grown, cultivated, harvested, picked, or gathered" | "grown and harvested" | "grown and harvested" |
| • 부가가치기준 | | | |
| – 일반기준[3] | 60% | PSR | PSR |
| – 계산법[4] | RVC 공제법 | RVC 공제법/집적법 | RVC 공제법 |
| – 기준가격 | 거래가격(TV) | 조정가격(AV) | 거래가격(TV) |

1) "Change in Tariff Sub-Heading"의 약자로, HS코드 상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의미한다.

2) (2개: 희석, 우회시도)

3) 협정문 본문에 규정된 일반적 부가가치기준을 의미하며, 부속서 품목별 기준에 특정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기준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품목별 기준이 우선한다.

4) 모든 협정문의 계산법에 순원가법이 포함되었으나 자동차 분야 적용을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다.





USMCA, 한-미 FTA, 한-캐 FTA의 농식품 분야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비교한 결과, 상당 부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서는 협정별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제1부에서는 모든 협정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2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USMCA와 한-미 FTA는 낙농품, 조란, 천연꿀에 대해 미소기준 예외를 두고 있는 반면, 한-캐 FTA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한-미 FTA와 한-캐 FTA는 닭고기를 제외한 육과 식용설육에 대해 2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USMCA는 닭고기를 포함한 모든 육과 식용설육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USMCA가 다른 두 협정에 비해 보다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USMCA는 일부 특수채소에 대해 미소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공정을 인정하는 등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마카다미아 너트와 차류, 후추 등 일부 품목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한-미 FTA와 한-캐 FTA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2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며, 예외 규정도 거의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한-미 FTA는 인삼을 제외한 산수목과 꽃에 대해 2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는 한-캐 FTA와 차이를 보인다.

제3부에서는 USMCA가 다른 두 협정에 비해 보다 많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USMCA는 양귀비와 아라비아 검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식물성 유지에 대해서는 미소기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한-미 FTA와 한-캐 FTA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2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한-캐 FTA는 동·식물성 유지에 대해 2단위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혼용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는 한-미 FTA와 차이를 보인다.

제4부에서는 세 협정 모두 다양한 가공식품에 대해 주로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USMCA는 코코아 가루와 크랜베리 주스에 대해 추가 조항을 두고 있으며, 낙농품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한-미 FTA와 한-캐 FTA는 이러한 추가 조항이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한-미 FTA와 한-캐 FTA는 쌀을 포함한 곡물·곡분의 조제품과 빵류에 대해 2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USMCA는 이 품목에 대해 2단위와 6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혼용하고 있다.

USMCA는 한-미 FTA와 한-캐 FTA에 비해 농식품 분야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USMCA는 일부 품목에 대해 미소기준을 적용하거나 추가 조항을 두는 등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예외 규정을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한-미 FTA와 한-캐 FTA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며, 예외 규정도 거의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각 협정의 특성과 협상 당사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2** Comparisons on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s – USMCA

| 부,류 | USMCA | 한·미 FTA | 한·캐 FTA |
|---|---|---|---|
| 제1부 | | | |
| 1. 산 동물 | 2단위 | 2단위 | 2단위 |
| 2. 육과 식용설육 | 2단위 | 2단위(닭 제외) | 2단위(닭 제외) |
| 4. 낙농품·조란·천연 | 2단위, 미소기준 예외 | 2단위, 미소기준 예외 | 2단위, 미소기준 예외 |
| 5. 기타 동물성 생산품 | 2단위 | 2단위 | 2단위 (산 동물 제외) |
| 제2부[5] | | | |
| 6. 산수목·꽃 | 2단위 | 2단위 | 2단위 (인삼 제외) |
| 7. 채소 | 2단위, 특수채소 미소기준 적용 일부 공정 인정 | 2단위 | 2단위 |
| 8.과일·견과류 | 2단위, 미소기준 예외 (마카다미아 너트 제외) | 2단위 | 2단위 |
| 9. 커피·향신료 | 2단위 (차류/후추 6단위) | 2단위 (후추 6단위) | 2단위 |

5) 비 당사국에서 수입한 씨앗, 인경, 근경, 삽수, 접목, 싹, 봉오리 또는 기타 산 식물의 일부에서 재배한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취급하였다.

| 부,류 | USMCA | 한·미 FTA | 한·캐 FTA |
|---|---|---|---|
| 10. 곡물 | 2단위 | 2단위 | 2단위 |
| 11. 밀가루·전분 | 2단위, 쌀가루/호밀가루 미소기준 적용 | 2단위(쌀 제외) | 2단위(쌀 제외) |
| 제3부 | | | |
| 12. 채유용 종자·인삼 | 2단위 (양귀비 예외) | 2단위 | 2단위 |
| 13. 식물성 수액 | 2단위 (아라비아 검 예외) | 2단위 | 2단위 |
| 14. 기타 식물성 생산품 | 2단위 | 2단위 | 2단위 |
| 15. 동·식물성 유지 | 4단위, 미소기준 예외 | 2단위 | 2/4단위 |
| 제4부 | | | |
| 16. 육·어류 조제품 | 2단위 | 2단위 | 2단위 |
| 17. 당류·설탕과자 | 2/4단위 | 2/4단위 | 2/4단위 |
| 18. 코코아·초코렛 | 코코아 가루 – 추가 조항 | 코코아 가루 – 추가 조항 | |
| 19. 곡물·곡분의 조제품과 빵류 | 2/6단위 | 2단위 (쌀 제외) | 2/4단위 (쌀 제외) |
|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 미소기준 예외, 크랜베리 주스 – RVC | 크랜베리 주스 – RVC | |
| 21. 기타 조제식료품 | 낙농품 제외 | 낙농품 제외 | 낙농품 제외 |
| 22. 음료·주류·식초 | 주스 – 추가 조항 낙농품 제외 | 주스 – 추가 조항 낙농품 제외 | 낙농품 제외 |
| 23. 잔재물·조제사료 | 2/4단위 (사료 예외) | 2/4단위 (사료 예외) | 2/4단위 (사료 예외) |
| 24. 담배 | 2단위 | 2/4단위 | 2/4단위 |

## 4. 시사점

우리나라는 USMCA 국가들과의 교역에 있어서 원산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USMCA의 원산지 규정은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USMCA 국가들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다시 해당 국가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SMCA 회원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미국이나 캐나다로 재수출하면, 해당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USMCA에서 인정하는 누적 원칙을 활용하여 여러 국가의 원재료를 통합하여 가공

한 제품을 특혜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USMCA의 경우 역외가공을 인정하고 있어 USMCA 회원국에서 일부 가공된 제품을 한국에서 추가 가공 후 재수출하는 전략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식품 가공업체들은 원재료 수입 시 USMCA의 원산지 규정 변화에 따른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수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원산지 규정에 따라 가공 공정이나 원재료의 비율에 변화를 줌으로써 더 많은 제품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 전략도 조절해야 한다. 예를 들어, USMCA와 한-미 FTA, 한-캐나다 FTA 간의 차이를 기반으로 제품별로 가장 유리한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는 전략 수립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USMCA 회원국들의 원재료 수요와 수급 현황, 그리고 이러한 원재료에 대한 수입 특혜 혜택을 조사하고, 원재료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성, 품질 및 공급 안정성을 평가하여, 우리나라가 어느 국가로부터 가장 효율적으로 원재료를 수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USMCA 국가들에 대한 농식품 수출전략을 개발할 때, 우리나라의 가공업체들은 원재료 공급업체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해당 국가들의 시장 특성과 소비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농식품 수출 기업들에게 USMCA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들이 협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 수입 및 가공 후 재수출과 관련한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USMCA 협정의 변화와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를 주시하며, 유연한 수출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본 고를 통해 USMCA와 한-미 FTA,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 규정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양자 FTA 협상 시 이를 반영하여 원산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향후 양자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자국의 농식품 산업의 특성과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산지 규정의 내용을 조정해야 하며, 양자 FTA의 원산지 규정 개선을 위해 협정 참여 국가의 농식품 산업 특성, 시장 규모, 소비자 기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양자 FTA의 원산지 규정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협상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된 규정처럼, 국내 산업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규정을 개선하면서도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양자 FTA의 원산지 규정 개선을 위해서는 실제 시장에서의 원산지 인증 절차나 관련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작은 규모의 농식품 수출기업들이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나 규정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가진 농식품의 비교우위와 협정 간 원산지 규정의 차이를 분석하여, 해외 시장에서 더 나은 경쟁력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수출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양자 FTA 협상에서는 원산지 규정 외에도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기술 장벽이나 위생 및 식품안전 관련 규정 등에도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제 표준 및 규정, 기술 및 연구 개발, 시장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농식품 수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USMCA와 같은 메가 FTA에서의 원산지 규정 변화가 글로벌 농식품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메가 FTA의 확산은 세계 농식품 교역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전략도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USMCA와 같은 메가 FTA에 참여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들의 농식품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EU의 CBAM이후 전개과정과 한국무역과의 연계성 연구

**김종권** 부교수
신한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 Ⅰ. 도입

EU의 의회를 통하여 2024년 4월 24일(현지시간의 기준) 들어 공급망실사법에 해당하는 CSDDD[1]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업(Corporate)의 지속가능성으로의 환경과 인권에 대한 ESG경영 준수와 관련된 지령이다. EU의 친환경의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2050년까지 방향을 의미하는 그린딜방안과 연결되어 있다. EU는 이에 앞서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어진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해당하는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통하여 저탄소와 관련된 정책들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CSDDD의 경우 시행시기가 2027년 정도로 역외의 기업들이 EU지역 순매출에서 4억5천만 유로 초과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모기업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EU지역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부담요인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EU의 CBAM은 2024년 1월 이후 분기별(quarterly)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다. CBAM은 알루미늄과 철강의 2차적인 가공물품을 비롯하여 수소와 알루미늄 및 철강 그리고 전기와 시멘트 등이 대상이다. CSDDD의 경우 한국의 EU 무역기업들 중 상당한 대기업들과 EU 공급망과 관련된 거래상의 중소기업들까지 의무 대상이다. CBAM에 있어서도 EU지역에 대하여 무역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EU의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배출량기준 강화에 대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EU의 CBAM은 2025년까지는 전환기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2026년부터는 확정기간으로 되어 있다. CBAM과 관련하여서는 EU와 무역을 진행 중인 세계 모든 국가들에 해당되어 이들 국가들과의 긴밀한 정책적 공조방안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 철강제품들이 제일 민감한 품목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에도 EU지역에 대한 철강제품 수출이 2026년 이후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모든 EU지역에 탄소감축을 하여야 하는 철강제품들을 비롯한 해당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의 기업들이 부정적인 효과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EU의 CBAM이후 전개과정과 한국무역과의 연계성 연구를 하기로 한다.

1) EU의 '공급망 실사법'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을 칭한다.

## Ⅱ. CBAM, CSDDD 및 CCA와 한국무역

EU 뿐 아니라 영국도 2027년 이후 CBAM을 도입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해당 품목들은 시멘트를 비롯하여 유리와 세라믹 및 수소와 비료 그리고 알루미늄과 철강 등이 대상이다. 물론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EU 뿐 아니라 미국의 청정경쟁법으로 알려져 있는 CCA[2]도 있어서 이와 관련된 대비책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CCA의 경우 2025년부터 적용되는데 제지와 유리를 비롯한 철강과 석유화학제품 및 정유 등 12개의 품목들이 대상이다. EU의 CBAM과 미국 CCA 모두 향후 품목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로 인하여 EU와 영국, 미국 들의 국가들에 수출할 때 관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이들 국가들의 재정확충과도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그림 II-1〉에는 EU 중 프랑스와 영국의 최근 경제성장률(분기별, 평균)(단위 : %)이 나타나 있다. EU의 대표적인 국가 중 프랑스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2021년 3분기 2.98%를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추세에 놓여 있으며 영국 경제성장률의 경우에도 2021년 2분기 7.33%를 보인 이후 하향 안정추세를 갖고 있다. 이는 산업경쟁력 부문에 있어서 최근 중국의 태양광패널산업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 등의 EU지역에 대한 수출증가 비롯한 가격경쟁력의 열위에 놓여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 모멘텀으로 인한 재정확충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II-1 EU 중 프랑스와 영국의 최근 경제성장률(분기별, 평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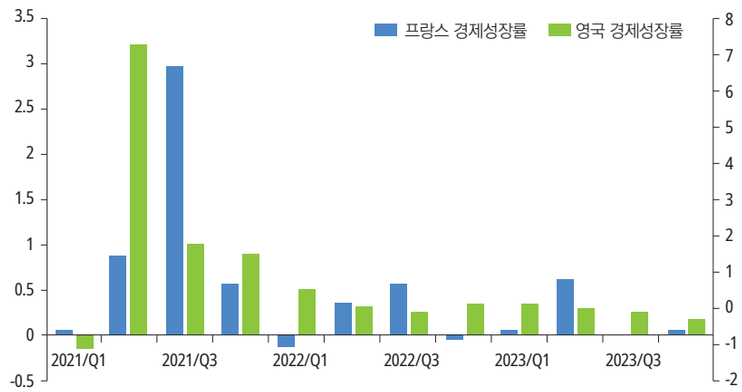


출처: 2024년 한국은행

2)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제법(Clean Competition Act)'을 칭한다.





**그림 II-2 미국과 한국의 최근 경제성장률(분기별, 평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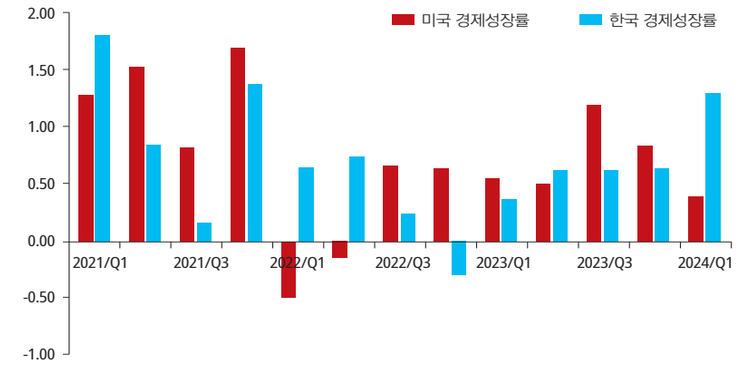


출처: 2024년 한국은행

〈그림 II-2〉는 미국과 한국의 최근 경제성장률(분기별, 평균)(단위 : %)이 나타나 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경기의 수출여건의 회복에 의하여 2024년 1분기 1.28%로 반등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2023년 3분기 1.19% 경제성장률을 나타낸 이후 2024년 1분기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U의 CSDDD에서는 환경 뿐 아니라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을 근거로 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실사를 하는 법안이다. 여기에는 EU의 역내기업들에 대하여는 세계 순매출규모 4억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들과 직원의 수를 기준으로 1천명을 초과하는 기업들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시행 시점으로는 순매출규모로 15억 유로 초과의 경우 빠르면 2027년 시점 그리고 순매출규모 9억 유로 초과의 경우 빠르면 2028년 시점, 순매출규모로 4억5천만 유로를 초과와 9억 유로 이하의 경우 빠르면 2029년 시점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청정경쟁법은 향후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 등의 완제품을 대상으로 까지 확대되어질 수 있다. EU의 CBAM과의 차이점으로는 온실가스관련 미국의 산업내 평균치의 배출집약도와 미국이 수입하는 국가들의 배출집약도 간에 차이가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1톤당 기준으로 부과되는 데 55달러에 이르는 부과 내용이 있으며 관세액과 관련하여 2025년에 55달러이지만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이러한 EU CBAM과 CSDDD, 미국의 CCA 등이 등장한 배경에는 이들 국가들의 일자리창출 확대와 함께 관세 또는 벌금 부과 등에 따른 재정확대 및 중국의 신재생에너지관련 태양광산업과 배터리분야와 전기자동차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전개되는 양상은 EU와 미국 모두 철강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산과 인도산 제품들을 견제해 나가고 있다. 한국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국 철강의 경우 중국산 및 인도산과 함께 EU를 비롯하여 견제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 있어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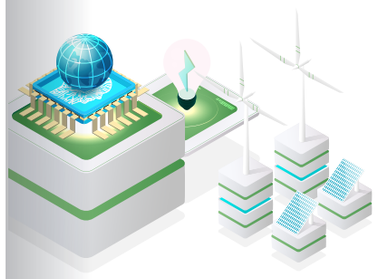

**그림 II-3** 연도별 한국의 EU 수출증감률(평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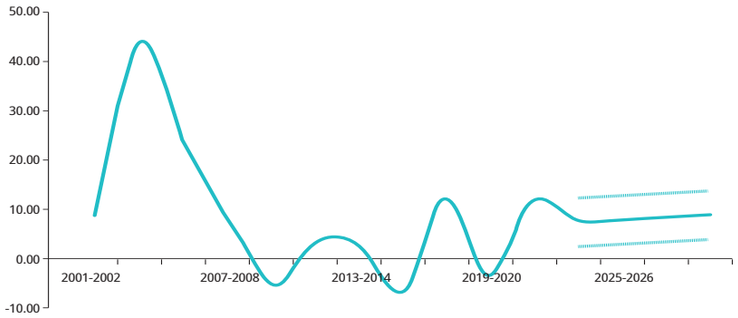


〈그림 II-3〉은 연도별 한국의 EU 수출증감률(평균)(단위 : %)이 제시되어 있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이고 2024년부터 2030년까지는 직접 ARIMA모형에 근거를 둔 추정치에 해당한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외부적인 효과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시 한국의 EU 수출증감률은 2030까지 안정적인 증가 방향의 추세(trend)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ARIMA모형에 따른 통계적 추정방법론의 경우 (1, 1, 0)에 해당하며 ARMA($k,s$)로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여기에서 $z_j$와 관련하여서 전개할 때 $z_j = \beta_1 y_{j-1} + \beta_2 y_{j-2} + \cdots + \beta_k y_{j-k} + \gamma_j - \rho_1 \omega_{j-1} - \rho_2 \omega_{j-2} - \rho_3 \omega_{j-3} - \cdots - \rho_s \omega_{j-s}$ 이다. 임의변수인 z와 관련해 하첨자인 j는 시차를 의미한다. 그리고 (1, 1, 0)에서 가운데의 1은 차분차수임을 나타낸다. MA로부터 가역성의 조건이 성립하고 AR로부터 안정성요건을 갖출 경우 $z_j$ 변수가 가역성의 조건과 안정성의 요건 모두 갖추게 된다.

**그림 II-4** 한국 철강재의 수출증감률(평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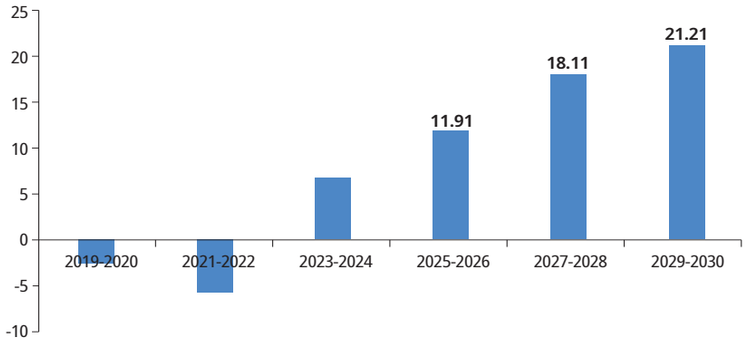






**그림 II-5** 한국 전철강의 수출증감률(평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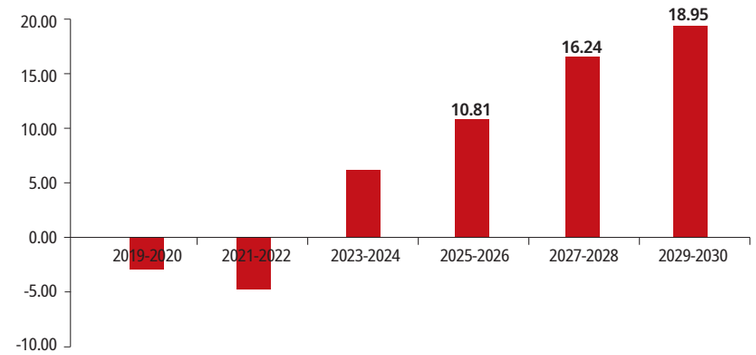


〈그림 II-4〉는 한국 철강재의 수출증감률(평균)(단위 : %)과 〈그림 II-5〉는 한국 전철강의 수출증감률(평균)(단위 : %)이다. 2019년부터 2024년 1월과 2월까지의 자료는 World Steel Association을 통하여 분석한 것이며 이후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1, 1, 0)의 ARIMA모형에 따른 각각 직접 통계적 추정방법론을 적용시켜 나타난 추정치들이다. EU와 미국 등의 견제로 인한 중국산의 철강재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국내환경을 비롯한 각종 법안들이 발효되는 변수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을 시에 철강재와 전철강의 모두에서 2030년까지 증가 추세(trend)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림 II-4〉에서 철강재의 경우 한국 철강재의 수출이 2030년까지 21.21%(평균)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림 II-5〉에서 한국 전철강의 수출이 18.95%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단지 2024년의 경우 자료의 부족으로 1월과 2월까지 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2024년 3월 이후의 수치 변동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 III. 한국무역에 대한 시사점과 대처방안

RCEP과 IPEF를 통하여 중국과 인도 등과 함께 EU의 CBAM에 대한 철강을 비롯한 민감한 품목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력적 모색을 해 나갈 수 있다. 인도의 입장으로는 시멘트와 철광석 및 철강에 대하여 27.5%의 평균 관세율이 부과되는 EU의 CBAM에 대하여 보호무역주의에 근간을 둔 불합리한 법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인도의 중소 수출업자들에 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도의 철강업체들도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산업보호 명분으로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인도는 알루미늄과 철광석 및 철강에 대한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EU의 CBAM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BAM에 의하여 역내기업들이 역외기업들에 대한 데이터의 접근허용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원리에 위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CBAM에 대한 위반 시의 벌금에 있어서의 상한도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국도 중국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측면이다. 기밀보호가 중요한 쟁점으로 EU역외의 제조 기업들의 제품에 있어서 공정과 원재료의 비율과 같은 민감한 내용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국과 EU의 FTA를 근간으로 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CBAM이 EU의 재정적인 수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EU의 산업보호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EU지역에 대한 투자 강화와 공동 연구 및 개발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온실가스배출권의 거래에 있어서 이미 제도적인 정착이 되어 있음으로 CBAM에 대한 제출과 관련하여 국내기준이 통용될 수 있는 것도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과 EU 간의 FTA를 통한 협상강화로 향후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따른 저탄소 관련하여 운송연료와 건물에너지의 난방과 관련하여 3년 후부터 적용됨으로 대비책도 될 수 있다.

IPEF를 통하여 미국과 같이 탄소저장기술을 비롯한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와 그리고 일본과 같이 이들 기술에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도 탄소중립 기술의 강화라는 면에서 필요하다. 이는 향후 각국들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대외적인 협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에도 유용하다. 일본은 향후 고부가가치의 생산 공정설비 도입 기업들과 탈탄소화를 도입한 기업들에 대하여 세액공제 해택을 통하여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표준화작업도 하고 있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협력강화가 상호 국가들에 이익 가능성이 있다.

EU의 CSDDD 경우에도 많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EU지역에 대하여 수출하는 한국 기업체들이 보다 강화된 환경과 인권 등에 대하여 준비해 나가야 한다. EU의 경우 ESG경영에 중요 요소인 지배구조까지 포함하고 있음으로 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성 및 개선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함을 의미한다. 특히 EU의 CSDDD 경우에도 저렴한 중국산에 대한 공급망의 체계 개선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도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영향도 살펴보면서 한국과 EU의 FTA를 적극 활용하여 수입 협력업체 선정 시 한국기업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병행도 필요하다.





미국의 CCA는 궁극적으로 중국과 인도 등 전통적인 탄소배출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품목 수에서는 EU의 CBAM보다 1.7배 정도 높은 상황이다. 물론 EU의 CBAM과 미국의 CCA 모두 품목이 확대될 수는 있다. 한국의 주력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휴대폰 등 중에서 주요 완제품인 자동차와 전자물품 등이 포함될 수 있음으로 한국의 기업들에 부담요인이 클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를 비롯하여 IPEF 참가국이므로 이와 같은 협력측면에 있어서 한국 수출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부담요인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2023년에 환경기준의 강화를 필요로 하면서 중국의 제조업체와 관련된 혜택에 대한 방지차원에서 미국산의 제품에 비하여 온실가스의 배출량 과다의 해외 제품들에 대하여 해외오염관세 부과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법안도 결국 미국 내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미국 내의 산업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일환으로 판단되고 있다. EU의 CBAM에서와 마찬가지로 철강업체들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2년 후부터는 전기로의 신설로 용강을 직접적인 생산을 하는 방식을 포함한 저탄소배출 노력이 진행 중이다.

향후에도 EU와 미국을 비롯하여 친환경관련 제도적인 장치들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들에 대하여 무역을 하고 있는 국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과 함께 기존의 FTA에 대하여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현재의 FTA활용도를 높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동시에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하여 FTA체결국들을 포함하여 EU와 미국 등의 기업체들과의 기술협력과 공동대응 등도 필요하다. 그리고 EU와 미국 현지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비교적 EU CBAM과 CSDDD, 미국의 CCA 등에 대하여 잘 준비해 나가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무역기업들의 로드맵 설정과 노력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법안들이 준비되고 일자리 창출노력 및 자국 중심의 공급망의 체계와 산업보호 등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